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가. 개정 이유

○ 「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」에 따르면,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 우크라이나 사태, 국제유가·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, 국내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○ 마늘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,467톤에서 24,467톤으로, 매니옥 전분의 시장접근 물량을 현행 14,300톤에서 27,300톤으로 늘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저세율 물량 확대에 다른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, 물자수급 원활화 등에 기여 전망